

## 4. 相續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801號 1992. 12. 31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7항제4호중 “그 재산”을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6호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나목중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전까지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으로 하며, 동호마목본문중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 ·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목(1) 중 “법인세법 제16조제4호 · 제5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4호 · 제5호 · 제7호 및 제16호”로 하며, 동목(3) 중 “법인세법 제18조 ·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한다.

제5조 제6항제1호사목중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제공한다”를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중 “8킬로미터이내”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호주상속인”을 “호주승계인”으로 한다.

제32조중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중 “제32조제1항”을 “제32

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6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계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1조의3 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산식중 “주자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 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의 지분비율”을 “주자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 수”로 한다.

2. 주자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주자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 수 ÷ 주자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 수)

제41조의4 제2항의 산식중 “지분비율”을 “감자후 지분비율”로 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①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이하 이 항에서 “증자”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자(제41의3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신주 1주

당 인수가액)×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

②제1항의 산식중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제42조제2항중 “취득하는 경우에”를 “취득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로 하고, “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며,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 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을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

기업증자시 대주주가 실권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함(영 제5조).
- 나.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통작거리를 8킬로미터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인 20킬로미터로 확대함(영 제8조의3).
-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현재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처분대금으로 양수재산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이를 증여로 으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41조).
- 라. 기업증자시 일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그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의6).
-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취득보조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임차보조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함(영 제42조).

〈법제처 제공〉